

1 신고 대상



여타 법(가축분뇨법, 농지법, 건축법 등) 위반 농가 및 사업장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따르면 여타 법 위반 여부와 상관 없이 현재 영업 중인 개식용 업계는 모두 신고 대상



소규모 식용 개 사육 농가도 신고 대상인지?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육 규모와 무관하게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영업 중인 식용 개 사육 농장은 모두 신고 대상임



사업장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는지?



본인 소유, 임차 여부와 상관없이 업계 종사자 이면 신고 대상에 해당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지원 대상인지?



추후 마련될 시행령, 고시 등을 통해 지원기준이 정해지는 바에 따라 일부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자는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2 신고 내용 및 절차



사육마릿수 산정 기준은?



- 식용 목적 축종인 도사견(출하체중 50~60kg 내외) 및 믹스견(출하체중 15~20kg 내외)을 포함하며, 성견이 아닌 개체도 모두 포함 대상
 - 현재 사육마릿수는 신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평균 사육 마릿수는 최근 3년 평균('21~'23년)으로 산정
- *연평균 사육마릿수는 농가 구두답변 및 서류확인(농장 보유 출하영수증, 거래장부, 가축분뇨시설 신고서, 경영체등록자료 등)을 통해 확인



실사육면적(케이지·평사)의 정확한 의미는?



- 실사육면적은 농장에서 실제 가축 사육에 활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
 - 농가가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시설 신고 시 사육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
- *보통 육견 농가의 경우 사육 케이지의 개당 면적×케이지의 개수 등으로 산정



신고서 제출 내용은 어떻게 증빙 혹은 확인하는지?



- 농장 및 영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출하 영수증, 거래장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서·경영체 등록자료 등 제출 내용에 대해 증빙 가능한 모든 서류, 기록 등을 운영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운영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지 못한 증빙 자료는 신고서 수리 전 현장조사를 통해 농장 및 영업장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개식용종식법 관련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계획서

2024.2.6. ~ 8.5

신고

2024.2.6. ~ 5.7

작성 가이드라인, Q&A 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 및 제출처

제출 대상

-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도축·유통상인)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처리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

**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는 자

- 다만, 개식용종식법 제9조에 따라 법 공포일('24.2.6) 이후 신규 운영한 개식용 업체는 신고 대상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됨

접수처

-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특별자치시청·시청·군청·구청,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제출



신고

신고 절차

작성 및 제출(신고인)

서류·현장조사(시군구)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 내용 검토를 위해 농장 및 영업장 현장 조사 일자를 신고 처리 기간(10일) 중으로 협의해야 하며, 시군구 담당자 방문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안내

- (신고)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운영신고서(별지 제1호~제3호 서식), 신고내용별 증빙자료*

*예시 이외에 거래 장부 등 신고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서류, 기록 최대한 제출

증빙자료 예시

공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유사업종),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개사육농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증명서 (가축분뇨법)	도축유통상인	도축·유통 거래내역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확인서(농어업경영체법)		
개사육농장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 계약서(폐기물관리법)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신고증 사본
	그 밖에 사육마릿수, 사육면적 등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그 밖에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작성 및 제출(신고인)

검토 및 수리(시군구)

이행 점검(시군구)

작성 서류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작성 기준

폐업예정일

'27.2.6. 이내로 폐업 필요(개식용종식법 제5조)

이행조치 계획사항

폐업과 전업에 관한 이행조치 상세 명시

- (사육건 종식 계획) 현재 사육 중인 개의 처리 계획 (유통 등), 개의 증입식 중단(암수 분리, 중성화 등) 등 구체적으로 명시(개사육농장만 해당)
- (시설물 철거 등 폐업 계획) 개 식용 관련 시설물별 철거 기간 및 계획 등 폐업에 필요한 이행조치 구체적으로 명시
- (전업 계획) 전업 희망 업종 및 내용, 예상 전업 시기 등 (전업 희망시)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공포('24.8 예정)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 가능

